

교훈 : 성실 	<h1>가 정 통 신 문</h1>	제 2022 - 66 호
	<h2>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·평가 가이드 라인 안내</h2>	담당 : 교무기획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☎ (교무실) 031-365-8200 ☎ (행정실) 031-365-8210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·초·중등·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지침 및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2학년도 출결·평가 가이드 라인 [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-6178(2022. 4.28.)]을 안내해 드립니다. 2022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처리됨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과 출결 대체 증빙자료, 학생평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출결처리

- (등교중지)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

(증빙서류)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‘출결 증빙 대체자료’ 활용을 권장

※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,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
의심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·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*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결 증빙 불가
PCR 검사자 (예: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
- (기저질환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*이 있는 학생의 경우,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

* 만성폐질환, 당뇨, 만성신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증빙 가능

- (가정학습) 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하며 일수는 57일 내 외로 유지

- 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

※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'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'는 접종일만 증빙 가능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
평가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'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' 사유에 해당하므로, 임의변경 불가	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임의변경 불가
증빙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

※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

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

※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 결석의 종류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

2. 학생평가

- (등교중지) 평가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결석 처리(인정점 부여)가 원칙이며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

(인정점 관련 증빙서류)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 결과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, 진료확인서) 확인 필수

※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

- (코로나19 의심증상자)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,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(음성)를 학교장이 확인* 후 평가 응시 가능

*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,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(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,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등)

※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평가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함

2022. 5. 2.

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(직인 생략)